



제 422회 국회 (임시회)
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수산업가공업 폐업신고의 법적 근거 등 마련〉
■ 이양수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06599호

2025. 2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전문위원 최 선 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수산물가공업 폐업신고의 법적 근거 마련 등	2
[참고자료]	8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양수의원 등 10인

2. 제 안 일 : 2024. 12. 17.

3. 회 부 일 : 2024. 12. 1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,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그러나 식품위생법, 축산물 위생관리법,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,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,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, 수산물가공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및 제47조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수산물가공업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 등 마련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수산물가공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,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3항 개정).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) ① (생략)	제16조(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<u>변경하려면</u>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변경하거나</u> 영업을 폐업하려면----- -----.
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</u>	③ ----- ----- <u>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폐업신고를</u> ----- -----.
④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/u>	④ <u>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</u>

<신 설> 제47조(과태료) ① . ② (생 략)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<u>변경 사항을 신고하지</u>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④ (생 략)	<u>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</u>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<u>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/u> 제47조(과태료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<u>변경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</u>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-	--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법 제16조는 수산물가공업에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¹⁾.

다만, 수산물가공업 폐업신고에 대해서는 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고,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‘수산업 가공업 신고확인증’에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거나

1) 수산물 가공업 신고 현황에 대해서는 [참고자료1] 참조

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, 신고확인증 반납이 사실상 폐업을 알리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음²⁾.

- 이와 달리 유사 입법례인 「식품위생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는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,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,

폐업신고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, 행정관청으로부터 범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가 고의적으로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[폐업신고 관련 유사입법례]

법령명	내 용
식품위생법	제37조(영업허가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⑤ ~ ⑦ (생략)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
축산물위생관리법	제24조(영업의 신고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, 재개업 또는

2) 시행규칙 별지의 신고확인증 양식 등에 대해서는 [참고자료2] 참조

	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 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 다만,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⑦ ~ ⑧ (생략)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	제5조(영업의 허가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营业을 폐업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③ ~ ⑥ (생략)

□ 개정안은 수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폐업신고의 근거를 명시하고,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

폐업신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 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, 행정적 측면에서도 폐업신고의 저조로 인해 업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관리가 어렵게 되는 등 여러 불편이 따를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,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.

□ 이와 관련하여,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점을 검토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.

우선, 개정안은 폐업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내용을

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폐업신고를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행정관청에 폐업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폐업신고의 특성 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, 수리의 대상에서 폐업 신고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임³⁾.

다음으로, 폐업신고를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자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입법례⁴⁾가 있으므로,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□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으로, 해양수산부는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폐업신고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이며,

다만 부칙 시행일의 경우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에 폐업신고서 양식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,

3) 이는 기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운영되고 있던 수산물가공업 신고에 폐업신고 관련 규정을 추가하면서 폐업신고까지 함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된 경우로 보임.

4) 「식품위생법」

제37조(영업허가 등)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(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)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

제24조(영업의 신고) ⑦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(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)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

시행일을 현재의 ‘공포한 날’에서 ‘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’로
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02)6788-5422

참고 1

수산물 가공업 신고 현황('23.12.31. 기준)

구분	종 류		유효 건수	'23년 폐업건수 (반납건수)
신고	수산동물유 가공업		10	-
	냉동냉장업		695	6
	선상수산물가공업	수산동물유	0	-
		냉동냉장	194	3
	그 밖의 가공업	수산피혁가공업	2	-
		수산식물(해조류)가공업	125	3
합계			1,026	12

시행령 제13조(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)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.

- 1. 수산동물유(水産動物油) 가공업:**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
- 2. 냉동·냉장업:**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가. 연육(練肉):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)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
 나.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
 다.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·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
- 3. 선상가공업:** 「수산업법」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
- 4. 그 밖의 가공업:**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·호료(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)용·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

참고 2

현행법에 따른 기존 폐업신고 방식

- 「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 서식인 「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」에는 수산물 가공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,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음
- * 단, 본 사항은 「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본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휴업 및 폐업신고 수요가 있을 경우 신고방식에 관한 문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

○ 별지 제10호 「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」 (뒤쪽) 3호

☞ “그 밖의 사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해야 합니다”

■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				(일쪽)	
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					
(앞쪽)					
제 호					
신고인	성명		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)		
	주소				
가공업의 종류		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			
가공공장의 주소					
제품의 종류					
생산능력	일일 생산능력		수용능력		용적률
	t/d				
선상 가공업의 경우	가공업의 종류		선박명		
	어업의 종류				
	주요 기기 및 시설				
처리 능력	냉동	일일 생산능력		온도(섭씨)	
		t/d		℃	
	냉장	저장능력		온도(섭씨)	
		용적률		℃	
조건					
「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.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, 부산광역시 OO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				
210mm×297mm(복사제150g/㎡)1					

(일쪽)		
1. 변경사항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주요 기기의 명칭·수량 또는 능력		
2. 행정처분		
처분 일자	처분 사유	확인
3. 그 밖의 사항: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해야 합니다.		